

소장

원 고 생 략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고영구, 이영직, 김남준, 전영식, 조형수

피고 대한민국

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

손해배상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3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. 4. 1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
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 대한민국의 지위

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국적이 속한 국가로서 피고의 소속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.

2. 원고들의 지위 및 사건의 경위

가. 원고 죄경수

(1) 원고 최경수의 지위

원고 최경수는 제16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(이하 ‘이 사건 선거’라 하겠습니다)일인 2000. 4. 13.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최경수는 헌법 제24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(이하 ‘법’이라 하겠습니다)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 22일전인 2000. 3. 21.(이하 ‘이 사건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’이라 하겠습니다) 현재 개 주 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(이하 ‘이 사건 선거인 명부’라 하겠습니다)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청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나. 원고 이수영

(1) 원고 이수영의 지위

원고 이수영은 이 사건 선거일 현재 33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이수영은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같은 항에 의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 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산구청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다. 원고 이대성

(1) 원고 이대성의 지위

원고 이대성은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이대성은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고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인 명부에 등

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만안구청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라. 원고 김학태

(1) 원고 김학태의 지위

원고 김학태는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김학태는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 작성은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마. 원고 윤석우

(1) 원고 윤석우의 지위

원고 윤석우는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윤석영은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
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의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므로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바. 원고 김철수

(1) 원고 김철수의 지위

원고 김철수는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김철수는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

이 있는 자이며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
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
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
장은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
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
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
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
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사. 원고 조원길

(1) 원고 조원길의 지위

원고는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
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조원길은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권이 있는
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
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
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같은
항에 의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야함에
도 불구하고 위 시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
부작성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
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
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아. 원고 김갑중

(1) 원고 김갑중의 지위

원고 김갑중은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.

(2) 사건의 경위

원고 김갑중은 헌법 제24조, 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,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선거인 명부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청장 및 기타 위 원고 주소지의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.

3.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

가. 피고의 책임 발생근거

(1) 법 제37조 제1항

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·시장·읍장·면장등(이하 '구청장등'이라 하

겠읍니다)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(2) 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인 명부의 의의

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인 명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선거에서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리어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을 공증, 확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공부를 말합니다.

(3) 이 사건 선거 사무의 담당자 및 이 사건 선거인명부작성사무의 성격

이 사건 선거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4조 제1항,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며 이 사건 선거인 명부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선거구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선거인인 국민 개개인이 과연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투표의 혼란 및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인바 이 사건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사무입니다.

(4) 피고의 책임

그런데 이 사건 선거인 명부 작성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인바 구청장등 및 기타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하부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위 선거인 명부의 작성사무는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사무로서 궁극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선거권이 있는 원고들을 구청장등 및 기타 이 사건

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
나. 손해배상의 범위

- (1)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주 공화국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‘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’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- (2)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민주 공화국,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작용이 이루어지는 국가체제의 성립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된다할 것입니다.
- (3)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국가는 형식적으로 헌법등에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국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바,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참여와 비판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(4)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(헌법 제24조 참조)이라 할 것입니다.

- (5) 즉 선거권이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이자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중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간접적으로는 여하한 정부를 원하느냐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 이러한 권리의 본질은 국민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주권성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 할 것입니다.
- (6)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 사건 선거권을 가지는 원고들이 마땅히 이 사건 선거를 행할 수 있게 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인 이 사건 선거권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기관의 과실로 원고들을 이 사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권을 행사 할수 없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이 선거권을 침해하여 결국 원고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크나큰 좌절과 고통을 겪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원고 1인당 각 금 3,000,000원이 적당합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각 금 3,000,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발생일인 2000. 4. 1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

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 1통
1. 납부서 1통
1. 소송대리위임장 8통

2000. 6.

원고들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고영구, 이영직, 김남준

전영식, 조형수

서울지방법원귀중